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월 18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근
(금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21998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법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회사와 손자회사(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를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법 제19조의2 및 제32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인수·취득하여 취득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제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이란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일 것을 말한다.

⑥ 법 제2조제1항제6호의4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의4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격(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

는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을 “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4개월”을 “기준일(제2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기준일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부터 4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년”을 “기준일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조의6제1항 중 “증권업”을 “금융투자업”으로 한다.

제5조의8제2항 중 “1년”을 “기준일부터 1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제5조제3항제2호부터”를 “제5조제3항제1호부터”로 한다.

제11조 제목 중 “업무”를 “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전의 제11조제1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바목(중전의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제11조제1항제2호(중전의 제11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자회사등의 공동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라.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11조제1항제2호(중전의 제11조제2호)마목(중전의 라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란”으로,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금융기관 및 회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0분의 50(손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 당해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를 제외한다”를 “100분의 50[손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이하 이 항에서 “공동출

자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를 제외하고,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로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증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증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자회사등”을 “법 제3조에 따른 인가 당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새로 편입된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 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의 출자전환 등으로 지배하게 되는 회사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를 “종합금융회사”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만을 취

급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한정한다)”로 한다.

1.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기관

제16조 및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비은행지주회사 규정의 적용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비은행지주회사가 법 제3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요건(이하 “금융지주회사요건”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자회사의 주식가액 및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은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이 경우 비은행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자산총액은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3년의 범위에서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도록 하거나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도록 하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

2. 제1호에 따른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는 조치

3. 제1호에 따른 계획을 제출한 회사가 그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을 명하는 조치

제16조의2(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비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장상황에 대한 전망 등 전환계획의 전제가 된 가정 등이 타당하고 합리적일 것

2. 전환계획이 해당 기업집단 내 출자관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환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전환대상자”라 한다)의 주주분포 등에 비추어 전환계획에 제시된 이행기간 내에 실현될 수 있을 것

3. 전환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에 대한 자원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4. 전환계획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5. 전환계획을 추진·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조직 운영체제를 갖출 것

6. 분기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것

7. 전환계획 이행 시까지 별표 4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8. 전환계획 이행 시까지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

③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위제한규정의 유예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전환대상자는 유예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유예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전환계획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행 필요사항, 이행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9항에 따라 주식의 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 주식 및 그 주식 수, 처분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

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환계획 승인신청서의 서식, 전환계획의 세부 요건, 유예기간 연장신청의 방법 및 절차, 분기별 점검 방법, 전환계획 이행명령 및 주식처분 명령의 세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3(보험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 제1호에 따른 보험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 제2호에 따른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승인기준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의4(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 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 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승인기준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5 제1호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5 제2호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③ 비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하 “비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이 위탁자(위탁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자가 비은행지주회사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비은행지주회사등이 초과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법 제34조제5항,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각각 단일거래금액(법 제34조제5항에 따

른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 단일 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과 그 순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이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제2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방법
2. 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이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제24조의3 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에서 정한 방법

⑦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매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 가.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규모

- 나.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 다.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다음 각 목의 사항을 채권과 주식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가.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취득한 규모
 - 나. 분기 중 보유채권 또는 주식의 증감액
 - 다. 보유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가격
 -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⑧ 법 제34조제8항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보험회사는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단일거래금액이 해당 보험회사 총자산(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을 말한다)의 100분의 2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제3자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거래일부터 30일 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8

- 1. 신용공여 등의 자금의 거래
- 2. 증권의 거래(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 자산의 거래
- 4.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거래

⑨ 법 제34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조기회수 하도록 요구하는 등 비은행지주회사등의 경영에 영향을 행사하는 행위
- 2. 비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게 하여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 3. 법 제34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비은행지주회사등으로 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 4. 법 제34조제3항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비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대주주의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
- 5. 비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게 하여 대주주에게 자산의 무상양도·매매·교환 또는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⑩ 법 제34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대주주(회사만 해당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해당 대주주가 대주주인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한 경우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둘 이상이 해당 대주주를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⑪ 법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등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

⑫ 법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는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16조의6(신용공여한도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별표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등의 동일차주 및 동일한 개인이

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

③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는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4호”를 “법 제38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5호를 제3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23호, 제35호 및 제3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7호(중전의 제35호) 중 “제1호 내지 제33호”를 “제1호부터 제36호까지”로 한다.

- 9. 「담보부사채신탁법」
- 10. 「전자금융거래법」
- 1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1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35. 「공사채등록법」
- 36. 「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영업의 허가·인가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허가·인가 등이 취

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8호”를 “법 제38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3년”을 “재임·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제재의 종류별로 제1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겸직제한”을 “겸직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7조제1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9조제4항 본문에서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1. 법 제41조의5제1항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
-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겸직 운용 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
 - 가. 임직원 겸직에 따른 위험관리·평가에 관한 사항
 - 나. 임직원 겸직개시·종료절차에 관한 사항

다. 겸직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라. 고객정보(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고객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호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임직원이 겸직하는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각각의 확인서를 마련할 것

가. 겸직하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나. 겸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다. 겸직의 목적

라. 겸직의 기간

마. 그 밖에 이해상충 방지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제3호에 따른 확인서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나.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다.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라.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

③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자회사등의 직원이 해당 자회사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중 제1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되는 경우(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파견의 형태로 금융지주회사의 직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서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다만,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3.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서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본질적 업무로서 별표 6에 따라 위탁이 가능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다른 자회사등에서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다만,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88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금융지주회사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겸직이 개시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는 이미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임직원 겸직의 반기별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⑧ 법 제3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겸직의 목적
- 2. 겸직의 기간

3. 그 밖에 이해상충 방지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 겸직 승인·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 및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을 “법인(추가(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해당 금융지주회사와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제19조제4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해당 금융지주회사등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를 시행령」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법인은 제 외한다)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4.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과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7. 제1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제19조제4항제3호(중전의 제2호) 중 “금융지주회사”를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3호) 중 “금융지주회사”를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4호) 중 “제3호 외의 그 금융지주회사와의”를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과의”로 한다.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41조의5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업무의 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 2.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매매와 관련한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이해상충의 파악·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

9.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제18조제2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10. 법 제41조의5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11. 법 제47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이 제26조제2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5(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41조의5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란 제17조제1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5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해당 직원이 소속한 기관
2. 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에서 주의·경고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권한을 가진 기관

제20조의2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의2를 제21조의3으로 하고,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이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을 말한다.

제21조의3(종전의 제21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의 출자자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대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1인의 출자자로 본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공여한도”를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융투자업자
4. 보험회사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회사등이 은행인 경우: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
2. 자회사등이 종합금융회사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3. 자회사등이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금전,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4. 자회사등이 보험회사인 경우: 「보험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신용공여
5. 자회사등이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신용공여
6. 자회사등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신용공여
- ③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회사등이 은행인 경우: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
 2. 자회사등이 종합금융회사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2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
 3. 자회사등이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
 4. 자회사등이 보험회사인 경우: 「보험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 자기자본
5. 자회사등이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기자본
 6. 자회사등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기자본
 7.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제24조의3제7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
- 제24조의2의 제목 중 “대주주”를 “주요출자자”로 한다.
- 제24조의3의 제목 중 “대주주”를 “주요출자자”로 한다.
- 제24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의3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⑦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4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인 자회사등의 경우: 제24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기자본
 2. 은행지주회사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자회사등의 경우: 최근 분기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최근 분기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의 자산총

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최근 분기 말(최근 분기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말을 말한다) 이후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24조의4의 제목 중 “대주주”를 “주요출자자”로 한다.

제24조의5의 제목 중 “대주주”를 “주요출자자”로 한다.

제2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주주”를 “주요출자자(회사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해당 주요출자자가 대주주인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주요출자자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한 경우

제2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주주”를 “주요출자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주주”를 “주요출자자”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등 사이의 위협의 전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 1. 다음 각 목의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가. 준법감시인의 업무
 - 나. 내부감사업무
 - 다. 위험관리업무
 - 라. 신용위험의 분석·평가업무
 - 2.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본질적 업무 중 별표 6에 따라 위탁이 금지된 업무
- ②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서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1. 법 제41조의5제1항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
 -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위탁 운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
 - 가. 업무위탁에 따른 위험관리·평가에 관한 사항

- 나. 위탁의 결정·해지절차에 관한 사항
 - 다.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라. 고객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마. 수탁자의 부도 등 우발상황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
 - 바.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 확보에 관한 사항
 - 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받는 자회사등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위탁 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 가.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 나.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 다.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라. 업무위탁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마. 위탁보수 등에 관한 사항
 - 바. 그 밖에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방지,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제3호에 따른 업무위탁 계약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가.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 나.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 다.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 라.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
- ③ 금융지주회사는 그 자회사등 사이에 별표 6에 따른 본질적 업무로서 위탁이 가능한 업무(다른 법령에서 위탁을 허용하면서 별도의 금융위원회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업무는 제외한다)의 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금융지주회사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⑥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 사이에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의 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회사등이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

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는 이미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한 업무위탁의 내용 중 위탁보수를 변경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업무위탁의 반기별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⑧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무위탁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2. 위탁보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업무위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⑨ 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6에서 본질적 업무로 규정된 업무를 말한다.

⑩ 법 제47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외국 자회사등이 있는 국가에서 외국 감독기관의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아 위탁받으려는 금융업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사이에 이루어지는 업무위탁의 승인·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4항, 제5항, 제7항, 제9항,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자회사등은 해당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이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1. 다른 자회사등이 지배하는 개별 외국법인 주식 가액: 해당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제24조의3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2. 다른 자회사등이 지배하는 모든 외국법인 주식 가액의 합계액: 해당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⑥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상호저축은행
2. 증권금융회사
3. 종합금융회사

제27조제7항(중전의 제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량자산”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량자산”이란”으로 한다.

제27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4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전산자료 저장설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
4. 고객 등의 전화에 응대하는 시설

제27조제9항(중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은 공동광고를 하거나 전산 시스템, 사무공간, 영업점 및 제8항 각 호의 시설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제11항(중전의 제8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의2의 제목 “(개인신용정보등의 취급방침)”을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정하는 고객정보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2. 고객정보의 제공처
3.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⑥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1조의2를 제31조의3으로 하고,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금융관련법령 등의 범위) 법 제5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란 제17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의3(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3조에 따라 별표 7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의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대조표”란 금융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제34조제2항(중전의 제1항) 중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8조, 제19조의4, 제19조의5, 제20조의2,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열회사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투자매매업자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식을 인수·취득하는 회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회사등 편입 신고의 적용례)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일 이후 최초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의 출자 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은행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등의 적용례)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외이사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용공여한도 등의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금융지주회사등

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신용공여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상 증도상환 금지 규정(이 영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신용공여 계약인 경우로 한정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별표 3]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제11조제2항 관련)

1. 자회사등의 공동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

가. 자회사등의 공동상품 개발·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나. 자회사등과의 설비·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다. 자회사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제공

라. 자회사등에 대한 상표권 및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제공

마. 업무용부동산의 소유 및 자회사등에 대한 임대

바. 그 밖에 자회사등이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의 소유 및 자회사등에 대한 제공

2.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

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

가. 전산시설 등 전산 관련 업무

나. 인사관리 및 연수

다. 총무업무

라. 조사분석업무

마. 법률 및 세무 업무

바. 회계관리업무

사. 홍보업무

아. 준법감시업무

자. 내부감사업무

차. 위험관리업무

카. 신용위험의 분석·평가

타. 그 밖에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

[별표 4]

비은행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및 자회사등 편입승인 기준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관련)

1.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및 세부기준

인가기준	세부기준
가. 주식회사로서	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하기에 적합하고 추정재무

<p>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이 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p>	<p>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절할 것 3)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4) 외국법인인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지배하려는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이 아닐 것 5)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p>
<p>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p>	<p>대주주는 별표 1의2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할 것.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국정책금융공사 2) 예금보험공사 3) 한국자산관리공사 4) 한국산업은행 5)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따라 대주주가 되는 자.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가 되는 자는 제외한다.</p>
<p>다.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이 되는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p>	<p>1)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이 제28조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 그 자회사등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p>

<p>라.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따라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p>	<p>1) 주식교환비율(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과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 중 높은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나눈 비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가격(주권상장법인이 가) 또는 나)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당사자인 회사 간의 협의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주권상장법인 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가격 나) 주권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로서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 다) 주권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로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 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 2) 1)의 나) 및 다)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적절성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6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코스닥상장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교환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

2.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승인기준 및 세

[별표 5]

부기준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산정방법

(제16조의5제1항·제2항 및 제16조의6제1항 관련)

제17176호

관

보

2010. 1.18. (월요일)

94

편입승인기준	세부기준
가.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의 영위와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절할 것 3)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4) 자회사로 편입되는 외국 법인이 손자회사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외국 자회사가 새로 손자회사를 편입하려는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이 아닐 것 5)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나.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1)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자기자본이 제28조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 그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
다. 주식교환에 따라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절할 것	제1호라목에서 정한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구 분	산정방법
1. 비은행지주회사등이 그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제16조의5제1항 관련)	$\text{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 = \text{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 \times \text{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 가.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 제24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합계한 금액 나.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 다음 1)부터 5)까지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종합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1) 종합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15 2) 금융투자업자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0 3) 보험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4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4) 상호저축은행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0 5)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100
2. 비은행지주회사등이 그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출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제16조의5제2항 관련))	$\text{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 = \text{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 \times \text{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 가.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 제24조의3제7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합계한 금액 나.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 다음 1)부터 5)까지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종합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자회사등

	<p>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100 2) 금융투자업자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8 3) 보험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6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4) 상호저축은행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100 5)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100
<p>3. 비은행지주회사 등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 (제16조의6제1항 관련)</p>	<p>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 =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 ×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p> <p>가.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 제24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합계한 금액</p> <p>나.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 다음 1)부터 5)까지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종합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25 2) 금융투자업자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25 3) 보험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보험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 4) 상호저축은행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25 5)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250
<p>4. 비은행지주회사 등의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 (제16조의6</p>	<p>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 =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 ×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p> <p>가.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 제24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합계한 금액</p>

<p>제1항 관련)</p>	<p>나.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 다음 1)부터 5)까지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종합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20 2) 금융투자업자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20 3) 보험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보험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 4) 상호저축은행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20 5)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200
----------------	---

비고: 제1호나목3), 제2호나목3), 제3호나목3) 및 제4호나목3)은 보험회사인 자회사등이 2개 이상인 경우로서 보험회사별로 업종별 한도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개별 보험회사별로 자기자본에서 업종별 한도비율을 곱한 금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6]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 및 위탁금지 업무
(제2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구분	본질적 업무	위탁 금지 여부
1. 예금·적금의 수입	가. 예금·적금계약의 체결	금지
	나. 채무부담 증명행위 - 자기앞수표 발행, 예금잔액 증명서 발급 등	금지
	다. 입금 및 지급 업무. 다만, ATM을 통한	금지

	입금, 지급, 계좌이체 및 잔액조회 등은 제외한다.	
2. 대출	가. 대출의 심사 및 승인. 다만, 전산시스템에 의한 대출심사행위 및 신용조사표 작성 등 단순심사행위는 제외한다.	금지
	나. 대출계약의 체결 및 해지 업무. 다만, 대출모집의 업무는 제외한다.	금지
	다. 대출의 실행 및 회수	가능
3. 내·외국환	가. 환거래 관련 심사 및 승인	금지
	나.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금지
	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금지
	라.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금지
	마. 비거주자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금지
4. 채무보증 또는 어음인수	가. 채무자에 대한 보증 또는 어음 인수의 결정(또는 승인행위)	금지
	나. 채무보증을 위한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의 체결	금지
5.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과 어음관리계좌	가. 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금지
	나. 어음관리계좌 계약체결 및 해지	금지
	다. 채무부담증명 행위 - 어음발행 등의 증명서 발급	금지
6. 투자매매업	가. 투자매매업 관련 계약의 체결 및 해지업무	금지. 다만, 단순한 계좌개설 업무 및 실명확인 업무는 가능하다.
	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위한 호가 제시 업무	금지
	다. 매매주문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	가능

	라. 증권의 인수업무	금지
	마. 인수대상 증권의 가치분석업무	가능
	바. 인수증권의 가격결정, 청약사무수행 및 배정업무	가능
7. 투자중개업	가. 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 및 해지업무	금지. 다만, 단순한 계좌개설 업무 및 실명확인 업무는 가능하다.
	나. 일일정산업무	가능
	다. 증거금 관리 및 거래종결업무	금지
	라. 매매주문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	가능
8. 집합투자업	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의 체결·해지업무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투자유한회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투자합자회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투자익명조합(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업무	금지
	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결권행사를 포함한다]	금지. 다만, 집합투자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
	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원화자산(외화자산이 아닌 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

		<p>다)인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운용·운용지시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운용·운용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와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는 가능하다.</p>			<p>운용업무,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는 가능하다.</p>
<p>9. 투자자문업</p>	<p>가. 투자자문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p> <p>나. 투자자문의 요청에 응하여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p>	<p>금지</p> <p>금지. 다만, 투자자문계약자산 중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 및 원화자산인 투자자문계약자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가능하다.</p>	<p>11. 신탁업</p>	<p>가. 신탁계약(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을 포함한다)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의 보관·관리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p> <p>나. 신탁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보관·관리업무</p> <p>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운용과 운용지시의 이행 업무를 포함한다)</p> <p>라.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행사를 포함한다]</p>	<p>금지</p> <p>금지. 다만,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 또는 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의 보관·관리업무(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의 이행 업무를 포함한다), 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p>
<p>10. 투자일임업</p>	<p>가.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p> <p>나.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p>	<p>금지</p> <p>금지. 다만, 투자일임재산 중 외화자산의</p>			

		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원화자산인 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신탁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는 가능하다.
12. 보험업	가. 보험계약인수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금지
	나. 보험계약의 체결, 해지, 실효 및 부활처리	금지. 다만 「보험업법」 제8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자가 모집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다. 보험금 지급 여부 심사 및 결정	금지
13. 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계약	가. 신용계 계약의 체결 및 해지업무	금지
	나. 계금의 수입 및 추첨·입찰 등 업무	금지
	다. 납부금의 지급업무	금지
14. 상호저축은행의 신용부금업무	가. 신용부금 계약의 체결 및 해지업무	금지
	나. 부금의 수입업무	금지
	다. 급부금의 지급업무	금지
	가. 회원자격 심사, 이용한도 부여 및 발급 승인. 다만, 신용리스크를 직접 수반하지 않는 단순업무(기재사항 확인 등), 신용회원의 신용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카	금지. 다만, 카드의 유효기간 경과 시

15. 신용카드업	확인·신용도 조회업무는 제외한다.	드를 재발급 또는 갱신하는 과정에서 업무는 가능하다. 금지.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가 모집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가능
	나. 신용카드 회원 계약의 체결 및 해지 업무	가능
	다. 신용카드의 발급	금지
	라. 가맹점 계약의 체결	금지
16. 시설대여업 및 연불판매업	가. 시설대여 및 연불판매 심사 및 승인	금지.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에 대금을 입금하는 업무는 가능하다.
	나. 시설대여 및 연불판매 계약체결	금지
	마.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금지
17. 할부금융업	바. 거래승인	금지
	가. 할부금융 이용자에 대한 심사 및 할부금융 한도설정의 승인	금지
	나. 할부금융이용자와 할부금융 계약의 체결	금지
	다. 매도인과의 할부금융 계약의 체결	금지
18. 신기술사업	가. 신기술투자조합설립 및 자금의 관리·운용	금지. 다만,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조합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용자	가능

비고

1. 개별 업무 관련 법령에서 위탁을 허용한 업무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들 사이에 위탁이 가능한 업무로 본다.

2.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단순 반복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업무로서 최종 의사결정권한이 위탁자에게 있는 업무나 위탁자가 사전에 설정한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단순 확인하는 업무는 본질적 업무에서 제외한다.

[별표 7]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제33조의3제1항 관련)

1. 법 제4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인가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2. 법 제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 승인의 심사
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자본금 감소 신고의 접수 및 정관변경 신고·보고의 접수
4.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해당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시정권고 또는 보완권고
5.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 승인의 심사
6.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주주의 변경 승인의 심사
7.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상황 또는 주식보유 비율의 변동 상황 확인에 필요한 보고의 접수
8.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의 심사
9.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의

심사

10. 법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전환계획 승인의 심사
11. 법 제8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기금등이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12.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 실시
13.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전환계획 이행상황의 점검 및 그 결과의 공시
14.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전환대상자가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15.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 승인의 심사
16. 법 제8조의4제4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 승인의 심사
17. 법 제8조의4제9항에 따라 비금융주력자가 같은 조 제8항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
18. 법 제8조의5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19. 법 제8조의5제3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구 및 법 제8조의6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변경사실 보고의 접수
20.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등이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

- | | |
|---|---|
| 2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 | 31.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이행상황의 점검 및 그 결과의 공시 |
| 22. 법 제10조의2제1항·제6항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 조건등 및 법 제8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 | 32. 법 제22조제9항에 따라 전환대상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
| 23.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 | 33. 법 제23조에 따른 보험지주회사의 인가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24.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해당 명령을 이행하는지에 대한 점검 | 3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2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 35. 법 제29조에 따른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인가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
| 26.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편입신고한 자회사등이 신고대상회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 3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
| 27.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 37.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분기별 보고의 접수 |
| 28.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승인의 심사 | 38. 법 제34조제8항에 따른 자회사등인 보험회사의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에 관한 보고의 접수 |
| 29.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 전환대상자가 행위제한규정 유예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 | 39. 법 제34조제10항에 따른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조치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
| 30.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 실시 | |

40. 법 제34조제11항에 따른 비은행지주회사등 또는 대주주에 대한 같은 조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위반 여부 점검 및 자료의 제출 요구
41. 법 제3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임직원 겸직 승인의 심사
42. 법 제3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임직원 겸직 보고의 접수 및 해당 보고내용이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43. 법 제41조의5제7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임면 사실 보고의 접수
44. 법 제45조제4항에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
45. 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사실 보고의 접수
46. 법 제45조의3제4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등의 주요출자자 발행주식 취득사실 보고의 접수
47.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48. 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49. 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등이 제24조의5제1항 각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50.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의 심사
51. 법 제47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해당 보고내용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52. 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지침서 내용 보고의 접수
53.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조치. 다만, 해당 임원이 그 조치를 받은 사실을 금융관련법령에서 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치는 제외한다.
54. 법 제57조의3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 같은 조 제4항제1호다목·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조치
55. 법 제5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조치. 다만, 해당 임원이 그 조치를 받은 사실을 금융관련법령에서 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치는 제외한다.
56.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산 또는 합병 인가의 심사
57.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58. 제3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조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이유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설립인가 및 자회사등 편입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등 비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금융자회사 사이의 임직원 겸직 및 업무위탁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법률 제9788호, 2009. 7. 31. 공포, 2009. 12. 1. 및 2010. 2. 1. 시행)됨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의 설립인가 및 자회사등 편입승인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지주회사 업무범위 확대(영 제11조 및 영 별표 3 신설)

- 1) 금융지주회사는 경영관리업무 및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한 관리·통제 기능 및 지원기능이 미약한 실정임.
- 2)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관리업무에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를 추가하고, 경영관리 부수업무에 자회사등의 공동상품 개발·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제공 등의 업무를 추가함.

나.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승인요건(영 제16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비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전환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전환계획의 이행 시까지 금융지주회사등으로 간주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전환계획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재원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전환계획 이행 시까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 등 전환계획의 승인요건을 구체화함.

다.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영 제16조의3, 제16조의4 및 별표 4 신설)

- 1) 법률에서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지주회사에 비하여 설립 인가 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2) 이에 따라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지주회사에 비하여 대주주 요건 중 충분한 출자능력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등 설립 인가 시 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함.

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영

제16조의5, 제16조의6 및 별표 5 신설)

- 1) 법률에서 비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해서는 은행지주회사등에 비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한도, 동일차주 및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2) 이에 따라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을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에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을 구체화함.

마. 금융지주회사등 간 임직원 겸직 허용 절차(영 제18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 1) 법률에서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사이, 자회사등 사이에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되 별도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거나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함.
- 2) 이에 따라 자회사등 직원이 금융지주회사 업무중 경영관리 업무·자금조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자회사등에서 위탁이 불가능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등을 승인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바.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간 업무위탁 허용범위 및 절차 (영 제26조 및 별표 6 신설)

- 1) 법률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업 등의 일부를 다른 자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별도로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거나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함.
- 2) 이에 따라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등을 승인대상으로 규정하고, 다른 법률에서 위탁을 허용하면서 별도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등을 보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려는 날 7일 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